

## 집합투자기구 정정

- 대상 투자신탁 : 현대트러스트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1호 [채권]
- 대상 서류 : (간이)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 변경 내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변경후→현대머니마켓플렉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환매주기 변경  
종류S/종류S-P 명칭 설명 변경 및 그에 따른 판매보수 인하  
자본시장법 및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효력 발생일 : 2024.09.25(수)
- 정정대비표 (투자설명서)

항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집합투자기구 명칭	명칭 변경	현대 <u>트러스트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1호</u> [채권]	현대 <u>머니마켓플렉스증권자투자신탁1호</u> [채권]
[요약정보]			
집합투자기구 명칭	명칭 변경	현대 <u>트러스트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1호</u> [채권]	현대 <u>머니마켓플렉스증권자투자신탁1호</u> [채권]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현대 <u>트러스트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u> [채권]	현대 <u>머니마켓플렉스증권모투자신탁</u> [채권]
운용전문인력	최근 작성일자 기준으로 업데이트	-	<u>작성기준일 : 2024.09.10</u>
환매방법	환매주기 변경	(17시 이전) <u>3영업일</u> 기준가로 <u>3영업일</u> 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u>4영업일</u> 기준가로 <u>4영업일</u> 대금 지급	(17시 이전) <u>2영업일</u> 기준가로 <u>2영업일</u> 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u>3영업일</u> 기준가로 <u>3영업일</u> 대금 지급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종류S 명칭 설명 변경	판매 경로 :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기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 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 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 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 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 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명칭 변경	현대 <u>트러스트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1호</u> [채권]	현대 <u>머니마켓플렉스증권자투자신탁1호</u> [채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변경	현대 <u>트러스트단기채</u> 증권자투자신탁1호 [채권]	현대 <u>머니마켓플렉스</u> 증권자투자신탁1호 [채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사항	최근 작성일자 기준으로 업데이트	-	작성기준일 : 2024.09.10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나 종류형구조	종류S 및 종류S-P 명칭 설명 변경	<p>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추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p> <p>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종류 집합투자 증권에 한정하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p>	<p>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 (종류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u>를 취급하고, <u>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u> 후추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p> <p>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u>를 취급하고, <u>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u>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다. 모자형구조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현대 <u>트러스트단기채</u>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현대 <u>머니마켓플렉스</u>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및 법령개정 사항반영	<p>가. 투자대상</p> <p>현대<u>트러스트단기채</u>증권모투자신탁 [채권]</p> <p>※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p> <p>현대<u>트러스트단기채</u>증권모투자신탁 [채권]</p> <p>②채권 : 50% 미만</p> <p>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 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단기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발행 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제외)</p> <p>③자산유동화증권 : 40% 미만</p> <p>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제외)</p>	<p>가. 투자대상</p> <p>현대<u>머니마켓플렉스</u>증권모투자신탁 [채권]</p> <p>※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p> <p>현대<u>머니마켓플렉스</u>증권모투자신탁 [채권]</p> <p>②채권 : 50% 미만</p> <p>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 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단기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제외)</p> <p>③자산유동화증권 : 40% 미만</p> <p>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p>

		<p>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p> <p>나. 투자 제한</p> <p>※ 모두자신탁 투자제한</p> <p><u>현대트러스트단기채증권</u>모투자신탁[채권]</p> <p>동일종목 투자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1)〈생략〉</p> <p>2)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중략〉----- 총리령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u>)</p> <p>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자금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u>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u></p> <p>나. 투자 제한</p> <p>※ 모두자신탁 투자제한</p> <p><u>현대머니마켓플렉스증권</u>모투자신탁[채권]</p> <p>동일종목 투자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1)〈현행과 같음〉</p> <p>2)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중략〉----- 총리령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자금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9.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p>- 투자대상</p> <p><u>현대트러스트단기채증권</u>모투자신탁[채권]</p> <p>※ 모두자신탁 주요 투자전략</p> <p><u>현대트러스트단기채증권</u>모투자신탁[채권]</p>	<p>- 투자대상</p> <p><u>현대머니마켓플렉스증권</u>모투자신탁[채권]</p> <p>※ 모두자신탁 주요 투자전략</p> <p><u>현대머니마켓플렉스증권</u>모투자신탁[채권]</p>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S 및 종류S-P 명칭 설명 변경	<p>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u>집합투자증권</u>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p> <p>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종류 <u>집합투자</u> 증권에 한정하며,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p>	<p>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u>집합투자업자</u>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 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u>집합투자업자</u>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p>

		<u>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기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u>	<u>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기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기입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
나. 환매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개정 사항 반영	<u>〈신설〉</u>	<u>환매 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표 신설〉</u>
	환매주기 변경	<p>(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1)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3영업일(D+2)</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2)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u>4영업일(D+3)</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4영업일(D+3)</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6) 수익증권의 환매 제한</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u>일정한 날 전영업일</u>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u>전전영업일</u>)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li> </ul>	<p>(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p> <p>1)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u>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2영업일(D+1)</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2)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3영업일(D+2)</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6) 수익증권의 환매 제한</p> <p>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u>일정한 날</u>(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u>전영업일</u>)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li> </ul>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종류S / 종류S-P 명칭 설명 변경 및 그에 따른 판매보수 인하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u>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u></p> <p>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종류 집합투자 증권에 한정하며,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 (종류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u>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 [기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u>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u> 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u>를 취급하고, 객관적</p>

		<p><u>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u></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판매보수〉</u>            - 종류S : 0.08%            - 종류S-P : 0.06%</p>	<p><u>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판매보수〉</u>            - 종류S : 0.045%            - 종류S-P : 0.040%</p>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연금세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 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 작성일자 기준으로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 규모	라. 운용자산 규모 <u>작성기준일 : 2024.09.10</u>

□ 정정대비표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집합투자기구 명칭	명칭 변경	현대 <u>트러스트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1호</u> [채권]	현대 <u>머니마켓플렉스증권자투자신탁1호</u> [채권]
[요약정보]			
집합투자기구 명칭	명칭 변경	현대 <u>트러스트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1호</u> [채권]	현대 <u>머니마켓플렉스증권자투자신탁1호</u> [채권]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현대 <u>트러스트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u> [채권]	현대 <u>머니마켓플렉스증권모투자신탁</u> [채권]
운용전문인력	최근 작성일자 기준으로 업데이트	-	<u>작성기준일 : 2024.09.10</u>
판매방법	판매주기 변경	(17시 이전) <u>3영업일</u> 기준가로 <u>3영업일</u> 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u>4영업일</u> 기준가로 <u>4영업일</u> 대금 지급	(17시 이전) <u>2영업일</u> 기준가로 <u>2영업일</u> 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u>3영업일</u> 기준가로 <u>3영업일</u> 대금 지급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종류S 명칭 설명 변경	판매 경로 : 온라인슈퍼(S)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 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u>	판매 경로 : 온라인슈퍼(S)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u>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명칭 변경	현대 <u>트러스트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1호</u> [채권]	현대 <u>머니마켓플렉스증권자투자신탁1호</u> [채권]
-------------------	-------	------------------------------------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명칭 변경	현대 <u>트러스트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1호</u> [채권]	현대 <u>머니마켓플렉스증권자투자신탁1호</u> [채권]
5. 운용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최근 작성일자 기준으로 업데이트	-	<u>작성기준일 : 2024.09.10</u>
6. 집합투자 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종류S 및 종류S-P 명칭 설명 변경	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 (종류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u>

		<p>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종류 집합투자 증권에 한정하며,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사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p>	<p>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u>집합투사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다. 모자형 구조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현대 <u>트러스트단기채</u>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현대 <u>머니마켓플렉스</u>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8.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 대상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및 법령개정 사항반영	<p>가. 투자대상 현대<u>트러스트단기채</u>증권모투자신탁 [채권]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u>현대트러스트단기채</u>증권모투자신탁 [채권] ②채권 : 5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 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단기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발행 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u>,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제외) ③자산유동화증권 : 4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발행 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u>,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나. 투자 제한 ※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현대<u>트러스트단기채</u>증권모투자신탁 [채권] 동일종목 투자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생략〉 2)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중략〉----- 총리령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p>	<p>가. 투자대상 현대<u>머니마켓플렉스</u>증권모투자신탁 [채권] ※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대상 <u>현대머니마켓플렉스</u>증권모투자신탁 [채권] ②채권 : 5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 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단기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u>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u> 제외) ③자산유동화증권 : 40% 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u>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u> 나. 투자 제한 ※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현대<u>머니마켓플렉스</u>증권모투자신탁 [채권] 동일종목 투자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1)〈현행과 같음〉 2)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중략〉----- 총리령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p>

		<p>후순위 사채권,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u>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u>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u>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자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자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9. 집합투자기 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p>- 투자대상 현대<u>트러스트단기채증권</u>모투자신탁[채권]</p> <p>※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현대<u>트러스트단기채증권</u>모투자신탁[채권]</p>	<p>- 투자대상 현대<u>머니마켓플렉스증권</u>모투자신탁[채권]</p> <p>※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전략 현대<u>머니마켓플렉스증권</u>모투자신탁[채권]</p>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S 및 종류S-P 명칭 설명 변경	<p>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p> <p>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종류 집합투자 증권에 한정하며,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기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p>	<p>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b>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 (종류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b>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b>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b>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기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p>
나. 환매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개정 시행 반영	〈신설〉	<p><u>환매 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u> <u>〈표 신설〉</u></p>
	환매주기 변경	<p>(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3영업일(D+2)</u>에</p>	<p>(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u>2영업일(D+1)</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2영업일(D+1)</u>에</p>

		<p>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2)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u>4영업일(D+3)</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4영업일(D+3)</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6) 수익증권의 환매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u>일정한 날 전영업일</u> (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u>전전영업일</u>)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li> </ul>	<p>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2)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u>3영업일(D+2)</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u>3영업일(D+2)</u>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p> <p>(6) 수익증권의 환매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u>일정한 날</u>(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u>전영업일</u>)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li> </ul>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p>종류S / 종류S-P 명칭 설명 변경 및 그에 따른 판매보수 인하</p> <p>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종류 집합투자 증권에 한정하며,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lt;판매보수&gt;</u> - 종류S : 0.08% - 종류S-P : 0.06%</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추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p> <p>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lt;판매보수&gt;</u> - 종류S : 0.045% - 종류S-P : 0.040%</p>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S(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 (종류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추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u> 종류S-P(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u></p>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a href="#">연금세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a>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 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 작성일자 기준으로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 규모	라. 운용자산 규모 <a href="#">작성기준일 : 2024.09.10</a>

## □ 정정대비표 (집합투자규약)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명칭 변경	현대 <u>트러스트단기채</u> 증권자투자신탁1호 [채권]	현대 <u>머니마켓플렉스</u> 증권자투자신탁1호 [채권]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S/종류 S-P 명칭 설명 변경	<p>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현대<u>트러스트단기채</u>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라 한다.</p> <p>②&lt;생략&gt;</p> <p>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1. &lt;생략&gt;</p> <p>12. 종류S 수익증권 :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u>가 개설한 <u>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u></p> <p>13. 종류 S-P 수익증권 : <u>종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며,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u>가 개설한 <u>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u></p> <p>모투자신탁</p>	<p>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현대<u>머니마켓플렉스</u>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라 한다.</p> <p>②&lt;현행과 동일&gt;</p> <p>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1. &lt;현행과 동일&gt;</p> <p>12. 종류S 수익증권 :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 [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u></p> <p>13. 종류 S-P 수익증권 : <u>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u></p>

	명칭 변경	<p>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현대트러스트단기채증권</u>모투자신탁[채권] ⑤〈생략〉</p>	<p>수익증권</p> <p>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현대머니마켓플렉스증권</u>모투자신탁[채권] ⑤〈현행과 동일〉</p>
제25조 (판매가격)	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	<p>①〈생략〉</p>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u>제3영업일</u>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①〈현행과 동일〉</p>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3영업일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제27조(환매 가격 및 환매 방법)	환매주기 변경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제3영업일</u>(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제4영업일</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 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제3영업일</u>(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제4영업일</u>)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③, ④ 〈생략〉</p>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2영업일</u>(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3영업일</u>)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 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u>2영업일</u>(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u>3영업일</u>)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p> <p>③, ④ 〈현행과 동일〉</p>
제28조(환매 연기)	환매주기 변경	<p>① ~ ⑥ 〈생략〉</p> <p>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 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 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u>일정한 날의 전영업일</u>(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u>전전영업일</u>)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p>	<p>① ~ ⑥ 〈현행과 동일〉</p> <p>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 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 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u>일정한 날</u>(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u>전영업일</u>)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p>
제30조(기준 가격 산정 및 공고)	자본시장법 시행 령 개정사항 반영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 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 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u>대차대조표</u>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자리로 하여</p>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 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 격]은 제2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u>재무상태표</u>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p>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제32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u>대차대조표</u>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상세〉</p>	<p>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p> <p>1. <u>재무상태표</u>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현행과 동일〉</p>
제39조(보수)	종류S 및 종류S-P 명칭 설명 변경 및 그에 따른 판매보수 인하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기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기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p>(종류S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75  <b>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8</b>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p> <p>(종류S-P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75  <b>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b>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투자신탁 재산의 연평균기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기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은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p> <p>(종류S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75  <b>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5</b>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p> <p>(종류S-P 수익증권)</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75  <b>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40</b>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p>
부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4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편드명, 환매가격 및 방법 변경, 종류S/종류S-P 명칭 설명 변경 및 그에 따른 판매보수 인하,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기

타 : 변경 후 원본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